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43

발의연월일: 2025. 1.10.

발 의 자:한지아·고동진·최보윤

임이자·조경태·서일준

박성훈 · 김소희 · 김승수

진종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법 개정을 통해 2025년부 터는 매년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임.

그런데 해당 개정법률에는 행태조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음. 또한, 해당 개정법률에는 필요한 경우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탁이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위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것임(안 제51조의7).

법률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7제1항 중 "실시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탁받은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	법률 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	행태조사) ①
처장은 「하수도법」 제2조제9	
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	
류 사용 행태를 추정·분석하기	
위한 조사(이하 "하수역학 마	
약류 사용 행태조사"라 한다)	
를 매년 <u>실시한다</u> .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
	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
	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은 위탁받은 기
	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u>할 수 있다.</u>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